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50

발의연월일: 2020. 7. 14.

발 의 자:한정애·전혜숙·허종식

황운하 • 고영인 • 박성준

이상직 · 강병원 · 박홍근

진선미 · 이용우 · 윤재갑

윤미향 · 양이원영 · 김영주

강선우 · 장철민 · 김상희

윤관석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동 규정이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 이 있음.

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 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10조제1호). 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0조제1호 중 "제78조부터"를 "제76조의2, 제78조부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)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10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	
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	
의 벌금에 처한다.	
1. 제10조, 제22조제1항, 제26	1
조, 제50조, 제53조제1항·제2	
항·제3항 본문, 제54조, 제55	
조, 제59조제2항, 제60조제1	
항·제2항·제4항 및 제5항, 제6	
4조제1항, 제69조, 제70조제1	
항·제2항, 제71조, 제74조제1	
항부터 제5항까지, 제75조, <u>제</u>	
<u>78조부터</u> 제80조까지, 제82조,	제76조의2, 제78조부터
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	
반한 자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